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공포 2021.8.10. 시행 2022.8.11.)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수교육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 1)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구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1조)
- 2) ‘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구분(안 6조)
- 3) ‘사전교육과목’을 ‘교육과목’으로 구분(안 10조)

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구분(안 제3조)

다. 교육신청자 자격요건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구분(안 제4조)

라. 연수교육의 신청방법 규정(안 제5조, 별지 제6호서식 신설)

마. 연수교육의 표준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6조, 별표 1, 2호 신설, 안 제9조)

바. 연수교육 도입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 및 현업종사자 업무누수 방

지 등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해 집합교육 원칙 규제를 개선하여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사. 연수교육 수료자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해 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 대장과 수료자 명단 통보 서식 신설(안 제14조, 15조, 별지 서식 제7호, 제8호, 제9호)

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 설정(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전교육기관”을 “사전교육기관 및 연수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을 “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
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로서 부동산개
발 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
력의 범위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자 중 사
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
의 부분)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
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전단 중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4조에 의한”을 “사전교육 신청서에
는 신청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
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연수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연수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료증 사본을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9조제1항”을 “규칙 제9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정”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과정”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비용”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비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
시설”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방
법”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사전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3.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과목별 담당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제7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4항”을 “영 제10조의2제5항”으로,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개발”을 “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부동산 개발”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로, “별표1의”를 “사전교육에 한하여 별표1의”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10조제5항”을 “영 제10조의2제3항”으로, “한다”를 “하고, 연수교육의 총 교육시간은 20시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전교육과목”을 각각 “교육과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전교육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며,”를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과목·교재·시간, 대리 수강 방지대책 등의 온라인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중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별도의

교육장소와 수용 가능한 수강인원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따른”을 “따른 사전교육”으로, “수료증 발급대장”을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수료증 및 연수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제3항 중 “교육수료자”를 “사전교육수료자 및 연수교육수료자”로, “별지 제5호”를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9호의”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이상”을 “기간까지”로 한다.

제19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개정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제7조 제1항 관련)

1. 사전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공통 및 선택 과정 / 총 60시간)

구분	과 목	주요 교육과정	시간
공통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자의 에티켓 관리 등	3H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 정부의 부동산개발 정책방향 - 부동산개발업의 현황 및 구조와 문제점 - 법안의 주요내용과 제정 효과 등	3H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 및 갖추어야 할 능력 -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의 개발과 관리전략 등	3H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 부동산공법의 구조 및 법률체계 - 개별 법령의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 산지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2H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 부동산관련 조세의 구조 및 체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제도 해설 - 취득, 보유, 개발, 양도 등에 따른 세제 실무 -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회계처리 등	6H
	계		27H
선택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	-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대상 - 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 활용요령 - 잠재 우발 리스크 대응 및 관리요령 등	3H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분석	- 입지분석의 유형과 선정 원칙 - 상권분석 기법 및 시설별 입지선정 - 시장환경 조사 및 분석 - 수익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6H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 개발 컨셉 설정 및 사업 아이템 결정 - 사업규모 결정 및 사업방법 결정 - 분양가 및 임대가 산정기법 사례 - 사업별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4H
	부동산개발 금융과 자금조달기법	- 부동산금융 개요 및 기초이론 - 자금 수지 및 현금 흐름 분석 -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리츠 등 신종 자금조달기법 - 금융상품 조달시 주요 체크포인트 및 보유자산 운영관리 등	6H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 시설별 사업추진 절차 및 시행사례 - 주거 및 업무시설, 상업 및 유통시설, 골프장, 실버시설, 해외부동산 개발 - 팀별 Case Study,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 등	12H
	종합평가 및 수료	- 교육수료를 위한 평가시험 실시 - 수료증 발급 및 수료식 거행 등	2H
	계		33H

선 택	부동산개발 트렌드와 개발사례	- 부동산개발 트렌드(주거 및 비주거) - 최신 개발사업 유형 및 사례	3H
	4차산업혁명과 부동산개발	- 4차산업혁명과 미래 부동산개발 - 부동산개발과 IT기술의 융복합 (프롭테크, 프리콘 등) - 해외 선진 개발사례	3H
	부동산개발회사의 운영 및 사례	- 부동산개발사업 경영론 - 부동산개발사업 절차 및 시행사례 - 부동산개발 금융 및 자금조달 사례	2H
	종합평가 및 수료	- 교육수료를 위한 평가시험 실시 - 수료증 발급 및 수료식 등	1H
	소 계		9H

2. 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공통 및 선택 과정 / 총 20시간)

구 분	교육과목	주요 교육내용	시 간
공 통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과 윤리경영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3H
	부동산개발 정책변화 및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 정부의 부동산개발 정책방향 -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의 최근 제·개정 사항	4H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제도의 최근 제·개정 사항 -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회계처리	4H
	소 계		11H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① 성 명			사진 (3.5cm×4.5cm)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직 장 명				
⑤ 연 락 처				
⑥ 희망교육일시				
⑦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범위	자격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 ☐ 법무사 ☐ 세무사 ☐ 자산운용전문인력		
	학·석사학위 경력자	☐ 학사학위 경력자 ☐ 석사학위 경력자		
	실무경력자	☐ 금융기관 ☐ 국가·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7년 이상 개발경력자		
⑧ 면제대상확인 및 면제신청과목				
면제 대상 확인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 ☐ 법무사 ☐ 세무사		면제 과목 신청	
상기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대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교육면제대상 :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①명 칭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내역					
⑤교육과정명	⑥교육 시간	⑦교육장소	⑧학급당 정 원	⑨강사수	⑩1인당 교육비용 (천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과정(교육과목과 과목별 교육시간)을 명시한 서류					
2.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비용(수강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한 서류					
3.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과목별 담당강사 약력을 기재한 서류					
4.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시설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 (소유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서사본)					
5.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방법 및 평가, 사후관리 등 학사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6. 기타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신청서		
① 성 명		사진 (3.5cm×4.5cm)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직 장 명		
⑤ 연 락 처		
⑥ 희망교육일시		
⑦ 연 수 교 육 대 상 범 위	☐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된 전문인력 ☐ 직전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된 전문인력	
⑧ 사 전 교 육 수 료 여 부	사전교육 수료일	
	수료증 발급번호	
	교 육 기 관 명	
⑨ 연 수 교 육 수 료 여 부	연수교육 수료일	
	수료증 발급번호	
	교 육 기 관 명	
상기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연수교육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된 전문인력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2. 직전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된 전문인력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 수료증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유	효 기 간 :
위의 사람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발급 번호	수료 일자	성명	생년월일	구분(교부 또는 재교부)	교부	
						일자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교육기관명 :				통보일 : 년 월 일			
연번	수료증 발급번호	교육이수기간	성 명	생년월일	직장명	연수교육 대상범위 (사전교육3년경과 / 연수교육3년경과)	비고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제10조 및 제10조의2 ----- ----- -----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u>사전교육기관</u> 을 말한다.	2. ----- ----- ----- ----- <u>사전교육기관 및 연수교육기관</u> ----- -----.
제3조(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받	제3조(교육대상자의 범위) ① ----- -----

아야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2. 법률 제8480호 부동산개발업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
교육 의무제의 시행일 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업체
에서 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등록요
건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
문인력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사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 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
기 위한 자료로서 부동산개발 전
문인력---

<삭 제>

<삭 제>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
려는 자 중 사전교육 또는 연수

	<u>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u>
제4조(교육신청자의 자격요건) 제3조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서 사전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9조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서 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교육신청자의 자격요건) ① <u>제3조제1항</u> -----
<u><신 설></u>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신청)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신청) ① ----- ----- <u>별지 제1호 서식</u>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4조에 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1조	② ----- <u>사전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u> -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입증서류는 당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로 한다.	----- ----- <u><후단 삭제></u>
③ (생 략)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④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연수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제4항의 연수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료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 ----- <u>규칙 제9조제2항</u> -----

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u>교육과정</u> (교육과목과 과목별 교육시간)을 명시한 서류	1. <u>사전교육 및 연수교육과정</u> -----
2. <u>교육비용</u> (수강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한 서류	2. <u>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비용</u> -----
3. <u>교육과목별 담당강사</u> 약력을 기재한 서류	3. <u>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과목별 담당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u>
4. <u>교육시설</u> 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소유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서사본)	4. <u>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시설</u> -----
5. <u>교육방법</u> 및 평가, 사후관리 등 학사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5. <u>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방법</u> -----
6. 기타 <u>교육</u>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 <u>사전교육 및 연수교육</u>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당해 신청기관의 업무 및 예산비중 등으로 보아 당해 기	3. -----

관의 역량을 <u>사전교육</u> 에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	----- <u>교육</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과정) ① <u>영 제10조제4항</u>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u>사전교육</u> 의 표준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제7조(교육과정) ① <u>영 제10조의2제5항</u> ----- <u>사전교육 및 연수교육</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u>사전교육</u> 의 운영실태, 부동산개발업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과목비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 <u>교육과정</u> -----
제8조(교육면제대상) ① <u>부동산개발 전문인력</u> 중 영 별표1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u>별표1</u> 의 표준 교육과목중 당해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총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교육면제대상) ① <u>영 제10조의2제5항</u> 에 따라 부동산개발----- <u>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u> ----- <u>사전교육</u> 에 한하여 <u>별표1</u> 의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시간) 영 제10조제5항 에 따른 사전교육의 총 교육시 간은 60시간으로 한다.	제9조(교육시간) 영 제10조의2제3 항----- 60시간으로 하고, 연수교육의 총 교육시간은 20시간---
제10조(강사의 자격) <u>사전교육</u> 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 어야 한다.	제10조(강사의 자격) <u>교육</u> ----- ----- -----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u>사 전교육과목</u> 과 관련된 과목을 4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 는 자	1. ----- <u>교 육과목</u> ----- ----- ---
2. <u>사전교육과목</u> 과 관련된 분야 의 박사학위 소지자	2. <u>교육과목</u> ----- -----
3. <u>사전교육과목</u> 과 관련된 분야 의 석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 개발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3. <u>교육과목</u> ----- ----- --
4. <u>사전교육과목</u> 과 관련된 분야 의 학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 개발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	4. <u>교육과목</u>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비용) ① <u>사전교육</u> 의	제11조(교육비용) ① <u>사전교육</u> 및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 정하여야 한다.	<u>연수교육</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방법) ① <u>사전교육</u> 은 <u>출석수업</u> 을 원칙으로 하며, 필 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방법) ① <u>사전교육</u> 및 <u>연수교육</u> 은 <u>집합교육</u> 과 <u>온라인 교육</u> 을 병행하여 할 수 있고 -- ----- -----.
<신 설>	② <u>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과 목·교재·시간, 대리 수강 방지대 책 등의 온라인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
② 수업은 반을 편성하여 실시 하여야 하며, 각 반의 수강인원 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 -----.
<단서 신설>	<u>다만,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별도의 교육장소와 수용 가능한 수강인원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u>
<신 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이 발생하여 <u>집합교육</u> 및 <u>현장 견학</u>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u>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u>
제14조(수료증 발급) ① (생략)	제14조(수료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 ----- <u>따른 사전교육</u> ----- <u>사전교육 수료증 발급대장</u> ----- --.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수료증 및 연수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15조(교육수료자의 명단관리 등) ①·② (생략)	제15조(교육수료자의 명단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u>교육수료자</u> 의 명단 통보를 위한 양식은 <u>별지 제5호</u> 서식에 의한다.	③ ----- <u>사전교육수료자 및 연수교육수료자</u> -- <u>별지 제5호 및 별지 제9호의</u> ----- --.
제17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생략)	제17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u>기간이상</u> 보존하여야 한다.	② ----- <u>기간까지</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제19조(재검토기한) -----

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19년 1월 1</u>	-----
<u>일</u>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u>2023년 1월 1</u> ----- <u>일</u> -----

